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69호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의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산림교육시설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을 시·도지사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허용범위 내에서 우리 시 여건에 맞도록 유아숲체험원 등록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촉진하여 산림교육을 활성화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으로 ‘숲길체험지도사’가 ‘숲길등산지도사’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안 제2조)

나.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완화하여 따로 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1. 23(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440-6235, 팩스 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법 제2조제1호”를 “법 제2조제2호”로, “숲길체험지도사”를 “숲길등산지도사”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유아숲체험원의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12조제4항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숲체험원의 규모는 5천㎡ 이상이어야 한다.
2. 유아숲체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의 유아숲지도사를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가.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0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1명

나.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1명 이상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2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산림교육전문가”란 <u>법 제2조제1호</u> 각 목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u>숲길체험지도사</u> 를 말한다. 3. 생략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조제2호 ----- -----숲길등산지도사----- -----. 3. (현행과 같음)
제7조(<u>유아숲체험장 운영 및 위탁</u>) ① <u>시장은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관내 수목원, 공원 및 산림 등을 유아 숲 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u> ② <u>체험장에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아숲지도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u> ③ <u>시장은 체험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체험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u> ④ 제3항에 따라 체험장의 관리·운	제7조(유아숲체험원의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12조제4항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숲체험원의 규모는 5천㎡ 이상이어야 한다. 2. 유아숲체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의 유아숲지도사를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가.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0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1명 나.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1명 이상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2명

현행	개정안
<u>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u>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2. 21.> 2.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숲길등산지도사: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 제12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 ①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운영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유아숲체험 원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 할 수 있다. <신설 2018. 2. 21.> ⑦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2. 21.>
------	--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50 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4> 1.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기준 2. 별표 3 제4호가목2) 및 3)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인원 기준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유아숲체험원 시설 등록 기준” 규제를 완화하는 사안으로 별도의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해당 없음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유아숲체험원 시설 등록 기준” 규제를 완화하는 사안으로,
- 조례 개정 시 유아숲체험원 조성 가능 면적이 1만㎡에서 5천㎡ 이상으로 변경되고, 유아숲지도사 배치 인원 기준이 완화됨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4. 작성자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장 최 태 식